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2. 6 선고 2019가합100115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문종수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익균

변론 종결 2019. 11. 28.

판결 선고 2020. 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8. 10. 2. 접수 제111552호로 마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나. 같은 등기소 2018. 10. 2. 접수 제111553호로 마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 비 적 청 구 취 지

피고의 2018. 10. 1.자 총회에서 원고의 명칭을 피고로 변경하는 결의, 대표자를 C에서 D으로 변경하는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피고의 명칭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속 회원들의 탈퇴 등으로 원고와 피고로 분리되었는바, 이하 분리되기 전의 단체를 의미하고 필요에 따라 대표자를 표시한다)은 E협회 F 지구 제7지역 2지대 소속의 단체로서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자로 구성된 봉사단체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B은 2018. 2. 26. 그 회원인 G을 제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G은 2018. 3. 22. E협회 F 지구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E협회 F지구의 분쟁조정 중재자인 H은 2018. 5. 18. '제명에 필요한 이사회 구성원 전체의 2/3 이상 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G을 B에 재입회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B이 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E협회 F지구 총재는 2018. 7. 16. B에게 '2018. 7. 20.까지 I를 제명하고, G을 복귀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중재자의 최종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E협회가 회원제명 및 클럽차터1) 취소 등 클럽에 추가조치를 취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다. B(대표자 C)은 2018. 7. 17. 긴급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① B 차터반납의 건, ② 클럽 사무실 명칭변경 건과 클럽정관변경 안건 [클럽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사무실인 이 사건 건물의 사무실명칭을 'J위원회'로 변경하고, 정관 변경과 등기변경안건을 승낙하는 내용], ③ 등기상의 대표자 명의 변경의 건을 의결하였다.

라. B(대표자 C)은 2018. 7. 27. E협회 F지구 총재에게 'G의 제명사유에 동의하고, I의 제명결정에 동의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7. 27.자로 헌장을 반납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마. C는 2018. 7. 27. J위원회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등기상 대표자 명의를 'K'에서 'C'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였다가,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E협회는 2018. 7. 31. B에게 L클럽의 차터, 권리, 특권, 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스탠더스퀘어 처분2) 을 하였다.

사. J위원회는 2018. 8. 7.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단체의 명칭을 'B'으로 정정하고, 대표자를 'K'에서 'C'로 변경하는 의결을 하였다.

아. B의 회원 G은 신규회원 26명을 추가 가입받은 후, D과 함께 2018. 8. 10. E협회 지구본부에 B의 재조직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자. B(대표자 C)은 2018. 8. 24. E협회와 지구본부에 'E협회 결정대로 G을 복귀시키고, I를 제명하겠으니 차터 취소를 철회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차. E협회는 2018. 8. 30. B의 차터를 취소하고, 회원 17명을 퇴회 조치하였다.

카. B(대표자 C)은 2018. 9. 2. 지구협회에 C를 포함한 16명으로 재조직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타. C 등은 2018. 9. 14. 임시총회 겸 이사회를 개최하여, 단체의 명칭을 'B'에서 'A(원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파. E협회는 2018. 9. 29. G 등 28명으로 B을 재조직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 원고는 2018. 10. 5.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열어 'A'으로 지구 협회에 재가입하기로 의결하였고, E협회에 A으로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2018. 11. 14. 그 승인을 받았다.

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는 다음과 같다(그 중 순위번호 13-3, 13-4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

13	소유권이전	2014. 10. 7. 제138438호	2014. 8. 12. 매매	소유자 B 대표자 K
13-1	13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2018. 9. 4. 제100593호	2018. 7. 1. 대표자변경	대표자 성명(명칭) C
13-2	13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2018. 10. 1. 제110716호	2018. 9. 14. 명칭변경	B의 성명(명칭) A
13-3	13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2018. 10. 2. 제111552호	2018. 10. 1. 명칭변경	A의 성명(명칭) B
13-4	13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2018. 10. 2. 제111553호	2018. 10. 1. 대표자변경	C의 성명(명칭) D
14	소유권이전	2018. 11. 13. 제128975호	2018. 11. 12. 매매	M

너. E협회의 표준L클럽 헌장 및 부칙과 B의 정관, B 헌장 및 상조회칙 중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9 내지 27, 30, 31, 32호증, 을 제5, 9, 11, 14, 17, 18,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의 회원들은 2018. 7. 17. E협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B은 2018. 9. 14. 명칭을 원고로 변경하였다.

총전 클럽의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은 원고 구성원의 총유이다. D은 이 사건 건물을 빼앗기 위하여 원고의 명칭을 'A'에서 'B'으로, 대표자를 'C'에서 'D'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8. 10. 1.자 총회회의록을 위조한 후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D은 2018. 8. 7.경 N을 탈퇴한 자로서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위 총회는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고, 이사로서 서명, 날인한 자들도 회원이 아니다. 그리고 2018. 10. 1. 이 사건 건물에서 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 주위적으로 피고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만약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2018. 10. 1.자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I, C 등은 2018. 7. 17.경 이사에 대한 회의 통보도 없이 불법적인 이사회를 개최하여 B의 해산결의를 하였다. 이는 개인적인 탈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L클럽의 비 L클럽으로 명칭 변경은 L클럽의 해산절차가 있어야 하며 이사회 결의 이외에도 E협회 표준L클럽 헌장 및 부칙 제5조, 제10조 제5항에 따라 모클럽 회원 전체 과반수 찬성 요건이 있어야 하나, B의 해산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회원으로 G 이사가 잔존하였다. 결국 B은 계속되었다. 원고 측은 탈퇴를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음에도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2018. 9. 4., 2018. 10. 1. 원인무효인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2018. 10. 2. 명칭변경등기, 대표자변경등기를 하였고, 이는 적법한 등기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리고 2018. 10. 1.자 총회는 소집권한 있는 자에 의해 소집된 적법한 총회이고, 이사들은 피고의

구성원이므로, 총회 결의는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으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 경우에는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2)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나. 판단

1) 2018. 7. 27. 차터 반납 신청을 하기 전의 B은 고유의 정관, 이사회와 총회 등의사결정기관, 대표자를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고 보이므로, 비법인사단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교회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E협회의 차터는 어떠한 단체를 L 클럽으로 승인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차터의 반납은 해당 L 클럽의 설립 목적, 명칭, 성격 등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한다. 그런데 E협회 표준L클럽 헌장 및 부칙과 B의 정관에 차터의 반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차터 반납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회원 2/3 이상의 찬성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차터 반납 신청이 B의 해산을 결의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탈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결의에 참여한 회원들의 의사는 단체 자체는 존속하면서 L클럽에서 탈퇴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주장의

E협회의 표준L클럽 헌장 및 부칙 제10조 제5항은 E협회의 차터를 받은 단체의 하부 단체의 해산에 관한 규정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8. 7. 27. 차터 반납 신청 당시에 B의 회원 2/3 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C, O, P, Q, R, S, T, U, V, W, X, Y, Z 등 13명이 2018. 7.경의 B의 회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외에 원고는 D, I, AA가 회원으로 추가되어야 하고(갑 제18호증의 3), 이에 반하여 피고는 G이 회원으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을 제34호증). 피고는 E협회의 결정으로 I가 제명되었다고 주장하나, E협회 표준L클럽 헌장 및 부칙, B의 정관, B 헌장 및 상조회칙에 의하더라도 회원의 제명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I를 제명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회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D, I, AA, G을 포함하더라도 차터 반납 신청 당시 B의 회원 총수는 17명이다. 그리고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 O, P, I, Q, S, T, U, V, W, X, Y, Z 등 적어도 13명은 2018. 7. 17. 긴급 총회 및 이사회의 차터 반납의 건, 클럽 명칭 변경 건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가 회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D, AA, I를 제외하더라도 회원 14명 중 12명이 동의한 것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B의 회원 총수 중 2/3 이상이 차터 반납에 찬성하였는바, B은 2018. 7. 17. 긴급 총회 및 이사회와 2018. 7. 27. 차터 반납 신청으로 E협회에서 탈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탈퇴를 결의한 회원들의 총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탈퇴한 회원들이 단체의 명칭을 J위원회, B, 원고로 순차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 구성원들의 총유이다.

5) 피고는 B의 잔존회원과 2018. 8. 이후 새로 모집한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유환우

판사신수빈

판사최형준

별지

- 1) 차터(charter)는 L 관계용어집에 의하면, 헌장, 인증장, 설립허가로 번역된다.
- 2) E협회의 이사회방침서 중 제5장 클럽 부분에 의하면, 스탠티스 퀴(status quo) 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L클럽은 봉사활동, 기금모금사업 등이 금지된다.
- 3) 갑 제1호증과 을 제6호증의 정관은 작성 주체, 작성 시기, 조문의 배치에 상이한 점이 있으나, 그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